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11일,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5.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교 의원)

현행법은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 근거는 국가정원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민간정원 등의 조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등의 참여를 통한 정원산업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도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하여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민간 차원의 정원조성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원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황충연)

정원의 조성은 수목원의 조성 방법과 유사하여 현행법은 정원의 조성 등에 관하여 수목원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수목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 등을 조성하려는 자에게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한 수목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광역시자체→기초지자체, 지자체→민간 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 정원, 생활정원 등을 조성하려는 자에게 조성에 필요한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광역시자체→기초지자체, 지자체→민간 등)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정원 등에 대한 사업비 보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광역시자체→기초지자체, 지자체→민간 등)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 정원, 생활정원의 조성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